

전임연구원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 소속 전임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임용권자) 전임연구원은 해당 부서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각 해당부서에서 선발한 후, 교무처 교무팀(이하 관리부서)의 임용요청을 통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

제3조 (임용) ① 전임연구원은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관련법률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<삭제>

2. <삭제>

② 전임연구원의 재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하며, 소속부서장은 [별표 1]에 의한 심사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.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적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외부기관의 사업(과제)수행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사업(과제)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.

③ 전임연구원은 본 대학의 제반 교육시책을 따르고 대학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,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제4조(자격기준) 각 해당부서에 속한 전임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설연구소 : 각 부설연구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2. <삭제>

3. 교양대학 교학팀 :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, 바롬공동체 교육과 리더십에 관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

4. 교수·학습센터 : (교수법) 교육공학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(학습법) 학습심리/교육심리, 학습전공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
5. 학생상담센터 : 석사 이상 학위와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실무 경험이 있는 자

6. 교목실 : 석사학위 이상(전공분야 : 신학, 기독교교육학, 선교학, 목회학 등)의 학력을 가진 자

7. 위 이외 :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
제5조 (직무) 전임연구원의 직무는 임용계약서에 준한다.

제6조 (보고의무) 전임연구원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정원 및 보수) ① 전임연구원의 정원관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 전임연구원의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임용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. 단, 외부기관의 사업(과제)수행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다.

제8조 (휴가) ① 전임연구원의 휴가는 임용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임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9조 (복리후생) 전임연구원에게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 혜택을 부여한다.

제10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 <'03 제7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8조 및 제9조 개정 <'04 제19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 1항, 제4조 4호 개정 <'09 제12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 1항 개정 <'09 제22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 개정, [별표 1] 신설 <'12 제2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, 제8조 개정 <'13 제13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 ①항, 제4조, 제6조, [별표 1] 개정 <'15 제25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, 제3조제2항, 제8조제1항 개정, 제8조제2항 신설, 제10조 개정 <2016 제19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6호 신설 <2016 제26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, 제4조 제1호 개정, 제4조 제2호 삭제)

제, 제4조 제7호 신설 <2020 제3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3조 제1항 개정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, 제3조 제2항 제2항, 제4조 제3호 및 제7호, 제7조 조 제목, 제7조 개정, 동조 제2항 신설, 제8조 제1항 및 제2항, 제9조 개정 <2020 제27차 교무위원회>)

(별표 1)

전임연구원 재임용 심사평가서

1. 피평정자 인적사항

소 속		직 위	전임연구원
성 명		평정기간	-

2. 평가내용

평가영역 (100점)	평가항목	배점	평점(해당등급에 V표)					점수
			S	A	B	C	D	
인성 (25점)	책임감	5	5	4	3	2	1	
	성실성	5	5	4	3	2	1	
	배려심	5	5	4	3	2	1	
	봉사 및 서비스정신	5	5	4	3	2	1	
	친화력	5	5	4	3	2	1	
업무능력 (40점)	업무이해도	5	5	4	3	2	1	
	업무기획력	10	10	8	6	4	2	
	업무추진력	10	10	8	6	4	2	
	책무수행의 성실성	5	5	4	3	2	1	
	책무수행의 정확성	5	5	4	3	2	1	
	구성원/부서간 업무협조	5	5	4	3	2	1	
법령준수 (10점)	제규정/복무규정 준수	5	5	4	3	2	1	
	공사구분의 명확성	5	5	4	3	2	1	
기여도 (25점)	부서발전예의 기여도	10	10	8	6	4	2	
	계획대비 실적 추진정도	15	15	12	9	6	3	
계								
종합의견								
신규채용 필요성	(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작성하고 해당란에 V표) ㉠ 신규채용 필요() ㉡ 신규채용 불필요()							

※ 등급 설명(가중치)

S: 매우 우수(1), A: 우수(0.8), B: 보통(0.6), C: 개선요망(0.4), D: 부적합(0.2)

※ 각 항목별 배점과 평점 가중치의 곱을 합한 점수가 평가영역의 총점이 됨.(소수 첫째자리 반올림)

※ 총 합계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, 재임용이 가능함.

평가일 년 월 일
부서장 (인)